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03.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 안 이 유

2010년도 국정운영 핵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는 정부 및 도 정책에 부응하여 경상경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여 지역 공동체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안정 및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등의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3,999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13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2백만원이 증액된 220,73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72백만원이 증액되어 53,268백만원임.

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는 지방세 266백만원, 세외수입 188백만원 지방교부세 59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71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4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727백만원임.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1,927백만원(예비비 1,000백만원 포함), 재무활동 449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1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2,178백만원, 재무활동 174백만원, 행정 운영경비 20백만원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의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 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